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7. 5 선고 2024가단1028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5. 31.

판결 선고2024. 7. 5.

주 문

-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[별지] <표 1> 기재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B에 대하여 2024. 1. 4. 기준 아래 <표 2>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.

종합소득세	2009	2009-12-31	2011-11-30	6,341,630	10,746,930
종합소득세	2013	2013-12-31	2016-08-31	60,715,010	94,502,800
종합소득세	2015	2015-12-31	2017-06-30	1,308,200	2,094,800
종합소득세	2016	2016-12-31	2017-08-31	7,354,130	10,662,490
합계	75,718,970	118,007,020			

나.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와 [별지] <표 1> 기재 각 증여계약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증여계약')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좌로 위 <표 1> 거래금액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,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B의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된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증여 받은 40,000,000원은 B이 큰형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그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B의 위 40,000,000원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(B은 그에 상응하여 큰형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질뿐이다)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또한 피고는 수익자로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

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 받은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최아름

별지